

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(제1차 교육위원회) 2019. 4. 22. 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O 제출일자: 2019년 4월 9일

O 회부일자: 2019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병설·부설·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장 위임사항 중 일부를 학교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
- 직속기관장 위임사항 중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 보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O 교육장에게 위임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임발령 사항 중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
- 병설(병설유치원 포함)·부설·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적기 임용 및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정
-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'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· 보직부여'에 대하여 6급(상당) 이하로 그 범위를 지정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,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병설(병설유치원 포함)·부설·통합 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적기임용 및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함.
- 입법예고 기간 중 겸임발령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지난 3월 시행된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강 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,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외부 의견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'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· 보직부여'에 대하는 위임 사항의 적용범위를 6급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